

<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>

1.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

(1) 개요

- 개념 : ① 결손금 :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
 ② 이월결손금 : 결손금이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되는 것
- 소득별 결손금 발생여부
 이자소득, 배당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퇴직소득 : 발생하지 ×
 사업소득, 기타소득, 양도소득 : 발생함 ○

(2) 결손금 · 이월결손금 공제(통산)

구분	전기	당기	차기이후 이월공제 ^{*3}
부동산임대업 결손금 (주거용건물임대업 제외)	소급공제×	다른 소득에서 공제× (부동산임대업에서만 가능)	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
일반 사업소득 결손금 (주거용건물임대업 ^{*4} 포함)	소급공제 ○ ^{*1}	부임→근→연→기→ 이·배 ^{*2}	일반사업소득→(부임→ 근→연→기→이·배)
기타소득 결손금	소급공제×	규정 ×	규정 ×
양도소득 결손금	소급공제×	다른 소득에서 공제×	이월공제×

*1 결손금 소급공제

: 중소기업의 사업소득(부동산임대업 제외)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직전 과세기간에서 소급공제 가능함
 (한도 :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)

*2 금융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결손금 · 이월결손금 공제 특례

- ① 원천징수세율(14%) 적용분 금융소득 : 공제불가(∵14%적용분으로 분리과세효과와 동일)
- ② 기본세율 적용분 금융소득 : 공제여부 · 공제금액 선택가능

*3 이월공제

- ① 10년(2008년 이전 발생분은 5년)간 이월하여 공제
- ②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. 단 자산수증익·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공제 불가
- ③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전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
- ④ 추계시 : 추계하는 사업연도에는 이월결손금 공제×. 단, 천재·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

로 추계하는 경우에는 공제○ → 추계시에도 추계소득금액에서 당기의 결손금은 공제 가능함

*4 주택임대사업 지원목적으로 주거용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→ 2014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함

2. 부당행위계산의 부인

부당행위계산의 부인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등이 그 행위나 계산을 부인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함.

·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요건 :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

구분	내용
(1)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 것(p222)	
(2)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	① 원칙 : 고가매입·저가양도·고이율차입·저이율대부 등 법인세법과 동일 (시가와 거래가액 차액: 3억원 이상 또는 5% 이상) ② 특례 : <u>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임대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</u> × 단, 그 주택관련 경비는 필요경비 불산입
(3) 대상소득에 해당 될 것	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, 양도소득에 한함 → <u>입증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않는 이자·배당·연금·근로·퇴직소득은 부당행위부인대상</u> × 단,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사업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대상○

3. 공동사업의 경우 소득금액계산 특례

(1) 개요

<1단계>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그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

<2단계> '<1단계>'에서 계산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(출자공동사업자 포함)별로 분배

<3단계> 각 공동사업자가 자신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을 자신의 종합소득에 합산

(2) 공동사업소득금액의 분배방법

1) 원칙 : 개인단위 과세원칙 → ∴ 약정된 손익분배비율(없으면 지분비율)에 따라 분배

2) 특례 : 공동사업 합산과세

구분	내용
합산과세 사유	① 확정신고시 제출한 서류 등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현저히 다른 경우 ②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
합산 대상 소득	사업소득에 한함
특수관계인의 범위	과세기간종료일(12.31)현재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(제1조의 2 ①~③)에 따른 친족관계·경제적 연관관계·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
합산과세 방법	① 손익분배비율이 큰 자 ② 공동사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많은 자 ③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 많은 자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⑤ 세무서장이 정한 자
연대납세의무	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그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납세의무를 짐
결손금 통산	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 범위에서 결손금 통산 순서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의 동일 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함